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7 선고 2022가단513473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

담당변호사 전경능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3. 27.

판결 선고2024. 4. 1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,402,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3. 9.부터 2022. 3. 3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2024. 3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

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63조에 의하면,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,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.

원고는 2024. 3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"피고들은 원고 문중에 160,142,146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.

원고의 기존 청구취지는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인 반면, 원고가 변경신청을 한 새로운 청구취지는 피고들로 하여금 '문중'에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,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아니라, 기존 청구취지와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위와 같은 청구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2. 청구원인의 요지

원고는 D 대종회(이하 '이 사건 종중'이라 한다) 회원으로서,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피고 B, 이 사건 종중의 예금관리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종중의 재산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5,402,860원(= 12,115,170원 + 23,287,690원)을 임의로 출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,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35,402,860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.

1	C	2011. 1. 10.	1,349,230
2	E	2013. 3. 8.	1,800,000
3	B	2014. 6.	680,240
4	B	2014. 9. 9.	780,000
5	B	2015. 1. 3.	306,000
6	B	2015. 1. 6.	551,000
7	B	2015. 1. 7.	150,000
8	B	2015. 1. 13.	538,000
9	B	2015. 1. 19.	2,000,000
10	B	2015. 3. 1.	1,500,000
11	B	2015. 5. 23.	2,460,930

1	C	2011. 1. 10.	1,349,230
이상 소장 청구부분	소계	12,115,1701) 위 순번 1 내지 11번의 합계는 12,115,400원이나, 원고는 12,115,17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	
12	-	2014. 2. 17.	2,000,000
13	-	2014. 2. 11.	1,000,000
14	B	2014. 2. 11.	57,690
15	B	2015. 1. 19.	6,000,000
16	B	2015. 1. 19.	6,000,000
17	B	2015. 1. 19.	6,000,000
18	B	2015. 1. 19.	100,000
19	B	2015. 1. 26.	30,000
20	-	2015. 2. 10.	100,000
21	B	2015. 3. 1.	500,000
22	B	2015. 3. 1.	500,000
23	-	2015. 5. 23.	1,000,000
이상 2022. 4. 13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청구부분	소계	23,287,690	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종중의 재산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, 그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 종중이고, 이 사건 종중의 종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.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미영

1) 위 순번 1 내지 11번의 합계는 12,115,400원이나, 원고는 12,115,17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